

의안번호	2220409
의 퇴 인	황정아의원
회 답 일	2026.9.23.
추 계 번호	26F39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11년 적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8조의5 (비수도권 중소기업 유예에 관한 특례)	○ 수도권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년간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5 (비수도권 중소기업 유예에 관한 특례)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년간 중소기업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소가 예상됨

-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두는 것 외에, 본사·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 사업장의 투자액과 고용인원이 각각 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투자액과 고용인원보다 많아야 함
- 현행은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
- 2024년 결산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수는 328개이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의 수는 427개임
 - － 중소기업 적용 주요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절에 규정되어 있는

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제5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제7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4), 중소기업 지원설 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제8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8조의4) 등임

-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영업실적에 대한 자료가 필요
- 그러나, 해당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고, 향후 영업실적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지원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839	jwpark1209@assembly.go.kr